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 서호연 의원
- 나. 의안번호 : 제2742호
- 다. 발의일자 : 2025년 5월 26일
- 라.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2. 제 안 이 유

- 서울시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체육 시설 이용료에 대한 고령자 감면 기준이 없어, 후기 고령자의 신체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마련(안 제20조제4항)
- 나. 공원시설 이용료의 비고란에 감면 내용을 반영(안 별표2)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0조는 공원관리청이 입장료 및 공원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각 시설의 요금과 징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2항).

서울시는 법 제2조제4호1)에서 정하는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에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관련 사항은 현행 조례 제15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제16조(공원시설의 사용료), 제17조(점용료)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로 정하고 있음²⁾.

- 본 조례안은 후기 고령자의 건강관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조례 본문에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을 시장의 재량으로 규정한 반면, 별지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은 조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공원시설 내에는 단체 운동시설과 개인 운동시설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라. (생략)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카. (생략)

2) [별표 1] 공원입장료(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3] 공원 및 녹지 점용료(제17조 관련)

특히,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특정 연령층에만 감면 혜택을 부과³⁾할 경우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고령인구 지속 증가에 따라 감면(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재정 부담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시 전체 시설에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감면 정책을 마련한 후, 일괄 추진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시설이용료 감면현황

- 풋살경기장(청소년 30% 할인 및 어린이 면제, 팀원 50% 이상 요건),
- 파크골프장(평일 단체 30% 할인)
- 국궁장(65세 이상 30% 할인)에서 감면 제도 운영 중